

의안번호	2126156
의 퇴 인	이종배의원
회 답 일	2024.1.11.
추계번호	24E000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범위 확대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26조의2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○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중 전통시장사용분의 범위 확대 -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¹⁾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전통시장사용분으로 인정하여 40%의 소득공제율 적용

주: 1) "상점가"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로서, 일정 범위의 가로(街路)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·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함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6조의2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중 40%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전통시장 사용분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나,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상점가 사용분, 이들의 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대한 자료 필요
 - 소득세 신고자별 총급여액, 신용카드 공제항목별 사용액, 상점가 사용액, 결정세액 등의 자료 필요
- 그러나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상점가 사용분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고,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함

-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하여 총급여 규모별·공제항목별 신용카드 사용액 집계자료만을 제공하고, 개인별 신고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며, 상점가 사용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음
 -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규모별로 결제수단별(현금영수증, 직불체크카드, 신용카드), 사용처별(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·공연등)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집계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